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23.] [총리령 제2038호, 2025. 7.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수입식품 등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매년 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영업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부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음 해 12월 1일부터 하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시기를 단축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및 신고 대행업자가 수입식품 등의 식품유형 또는 제품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 총리령 제203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23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한다)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가) 별표 9 제2호다목1)에 따른 정밀검사[별표 10 제1호가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정한다]

나)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제35조제2항제6호 중 "이후 연매출액"을 "매출액"으로,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을 "2017년 6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다음다음 해 6월 1일"을 "다음 해 12월 1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 중 "다시"를 "5년 이내 다시"로 한다.

별표 13 I 제9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다음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매년 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한 수입식품등이 법 제21조

및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3)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별표 13 II 제3호나목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유형 또는 제품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	------	------------	-------------

별표 13 II 제3호다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유형 또는 제품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	------	------------	------------

별지 제27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합니다)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1)에 따른 정밀검사[별표 10 제1호가목 1) 또는 3)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정합니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24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수입·판매영업자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수입식품등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 외화획득용 원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수입신고인)	상호	성명			
	주소				
신청정보 (수입식품등)	제품구분	1: 농·임·수산물 []	발급번호		
		2: 축산물 []	(수입신고확인증)		
	3: 가공식품 []	발급일			
	4: 식품첨가물 []	(수입신고확인증)			
	5: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제품명	제품유형			
신고수량	(단위:)	용도변경수량			
신고중량	(단위:kg)	용도변경중량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승인 전			승인 후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용도변경 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물량에 대한 계약서 사본 제1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인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9 제2호가목5)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합니다)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9 제2호다목1)에 따른 정밀검사[발표 10 제1호가목 1) 또는 3)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정합니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